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5
----------	------

제출연월일 : 2017. 4. .
제 출 자 :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운영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17. 2. 23. ~ 3. 15.
- 2) 규제심사: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 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u></p>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성동구 소속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는 2016년 말 기준 6개로 등록면허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약 1,600천원으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함.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성동구 세무1과 김원경 (연락처 02-2286-5294)

< 관 계 법 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7. 4. 2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7. 4. 10. 성동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17. 4. 11.
- 다. 상정일자: 2017. 4. 21.

(제231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 가. 제안설명: 기획재정국장
- 나. 제안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운영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17. 2. 23. ~ 3. 15.
- 2) 규제심사: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이 증가하여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 지원으로, 공익적 비영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협동

조합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규정에 따라 취득세(50%), 등록면허세(50%), 재산세(25%)를 감면하고 있는것으로 비추어 볼때, 세제 지원의 형평성 고려 측면에서도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됨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